#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49

발의연월일: 2021. 11. 1.

발 의 자:권칠승·박 정·안민석

신정훈 · 오영환 · 윤관석

정춘숙 • 민병덕 • 임종성

임호선 · 이장섭 · 강병원

김민철 · 김민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사이버폭력이 지닌 가해행위의 시공간적 무제약성, 폭력 흔적 (기록)의 무한한 확산과 지속성, 빠른 전파성 등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가로 하여금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4, 제10조의3 및 제16조의3).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 중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사이버폭력 예방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예방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을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사이버폭력의 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구

- 2. 사이버폭력 관련 연수 지원 및 연수표준안 제작
- 3.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사이버폭력 대응 및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5.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사이버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 등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 등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	1
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 따</u>	<u>사이버 따돌림,</u>
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u>인</u>	1의3
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
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
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	<u>다)을 이용하여</u>
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 설>

2. ~ 5. (생 략) <신 설> \_\_\_\_\_

-.

1의4.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 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 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 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 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이버폭력 예방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을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 사이버폭력의 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구
- 2. 사이버폭력 관련 연수 지원 및 연수표준안 제작
- 3.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신 설>

- 4. 사이버폭력 대응 및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5.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운 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 정,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6조의3(사이버폭력 등의 피해 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 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 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 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 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 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 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 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 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 이버폭력 등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 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 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 등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 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